

2016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16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 10.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 11.3.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2. 편성사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을 위해 2016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규모**

- 세입 : 2백만원 증액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87,172	784,847	2,325	일평균 여권발급량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국비 전액보조 (21,794천원~44,441천원) ※ 관련공문 : 외교부 여권과-8069('16.02.19.)호

○ 세출 : 2백만원 증액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율(%)
시민소통기획관	41,018,400	40,016,075	2,325	0.006

#### 4. 검토의견

- 시민소통기획관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10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1천 6백만원의 0.006% 인 2백만원이 증액됨.
- 기존의 국고보조금은 의회에서 추후에 보고만 받고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심의없이 간주처리 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안 심의시 예결위에서 예산총칙에 존재했던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임.
-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여권발급을 분산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여권발급 편의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여권법」 제 21조 사무의 대행을 근거로 하고 있음.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사업으로 전년도 여권 발급량을 산출하여 배정액을 편성하고 있음.

<2015년 월별 여권발급건수>

월	건수	월	건수	비고
1월	81,245	7월	89,902	
2월	56,368	8월	71,639	
3월	73,489	9월	64,865	
4월	70,454	10월	74,324	
5월	69,055	11월	75,491	
6월	74,670	12월	94,502	
합계 : 896,004건		※ 1월~5월 평균 70,122건 1월~12월 평균 74,667건		

- '16년도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시 외교부 여권과에서 국고보조금 임시배정액('15.10월)을 기준으로 7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외교부에서 시로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시('16.2월) 7억 8천7백만원으로 증액 배정하여 2백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기정예산액은 외교부 임시배정액('15.1.1~5.31까지 여권 발급량으로 산정)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증액 배정('15.1.1~12.31까지 여권 발급량으로 산정)됨.

<붙임자료1> 외교부 여권과-8069('16.02.19.)호

# <붙임자료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외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 통보

2016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확정배정하고 D-Brain에 등록한 바, 동 교부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총액 : 5,517,000천원
2. 대상 기관 : 여권사무대행 239개 지방자치단체
3. 배정 기준 (지자체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단위 : 천원)

내역	목적	배정 기준	금액
기본배정 (대행기관 공통)	최소 단위 기관 운영 유지 비용 지원	기관별 15,000 - 15,000*239개=3,585,000	3,585,000
광역관리경비 (16개 광역시·도)	광역지자체 행정관리경비 (산하기관 자료취합·보고 등)	광역지자체별 300~6,900 - 산하 지자체 수(1개~23개 비례)	59,100
추가배정	일평균 발급건수 기준, 업무량 증대에 따른 소요 비용 보전	전 대행기관에 대해 일평균 초과 발급 21권 단위로 등급을 달리 부여하여 <b>업무량에 비례 추가 지원</b> ※일반,관용,거주여권 '15년 연간 실적 포함하되, 거주여권 업무량은 가중치부여 산출	1,872,900
계			5,517,000

### 4. 보조금 교부 조건

- 기존 교부조건(교부금의 10% 이내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환경이 상이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건의를 수용, 금년부터는 여권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집행

- 단, 보조금을 국외여비로 사용하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국고보조금을 국외여비로 편성·집행 금지 ('17년도 국고교부금 배정시 재조정 등 조치)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5. 송금 관련 사항

- 송금 방법 : 광역지자체 단위로 합산 송금
- 송금 시기 : 불임 합계 금액을 E-호조에 등록하고 D-Brain 사업단에 자료 송신 →**전체 광역 지자체 완료 확인 후 즉시**
- 광역지자체 조치사항
  - 전 대행기관의 배정금액 등록 및 자료 송신과정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조기 송금이 가능함에,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인 독려
  - E-호조 사업단에서 자료 취합 후 D-Brain 사업단으로 광역단위 자료가 최종송신 되었는지 확인하고,**3월4일(금)까지우리부에 공문 보고(반드시 광역 단위 취합 보고)**
  - 송금 후 광역지자체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금액을 재 송금 조치 필요

## 6. 배정 보조금 집행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편성예산에 우선하여**불용없이 100% 집행하고 지체없이 E-호조에 집행실적을 입력토록** 조치
  - 기획재정부는 집행실적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므로 광역단체는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이 적기에 전액 집행되도록 독려 요망

불임 : 2016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 1부. 끝.

# 외교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여권사무대행기관(광역)

외무행정관 외무사무관 여권과장

협조자

시행 여권과-8069 ( 2016.02.19. ) 접수 시민봉사담당관-4591 ( 2016.2.19.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코리아리제 / http://www.mofa.go.kr  
 보협빌딩)  
 전화 02-2002-0126 /전송 02-734-1954 / jihkim15@mofa.go.kr / 비공개(5)